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39
----------	------

2013년 7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5월 21일, 이순자 의원(1명)
-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5월 24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순자 의원)

-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임.
- 현재 서울특별시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기부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체조례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법에 조문화되어 있지 않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위탁, 포상

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자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큼.

- 특히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식품기부 활성화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서울특별시에서도 식품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필요함.
- 이에 서울특별시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된 식품을 통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임.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제안 배경 및 개요

-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등 현재 시행 중인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세부 사항별 검토결과

가. 시장의 책무 관련 (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있는 바,
 - 이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1항¹⁾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는 근거라고 사료됨.
현재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푸드뱅크(대량기탁, 일괄배분 형태로 운영되며 푸드마켓 및 복지시설

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등 위주로 배분), 푸드마켓(상시·자발적인 소량 기부물품 수령, 이용자의 직접방문으로 필요물품 선택, 슈퍼마켓 형태의 음식 나눔 공간), 푸드나눔카페(기존 푸드마켓에 커피 판매기능을 추가하여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하면서 기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푸드사업 홍보 창구), 희망마차 등의 사업 등이 있음.

〈표〉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사업

사업명	개소수	사업내용	목적	대상자(수혜자)
희망마차 운영	1개	기업의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가서 생필품 전달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복지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대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홀몸어른신 등
푸드뱅크 /마켓 운영	54개 (뱅크 : 27, 마켓 : 27)	생산,유통,판매,사용 과정의 식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나. 사업자의 책무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보임

- 법 제2조2)에 따라 “제공자”는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로서 식품기부자를 말하며, “사업자”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의 종사자를 의미함.

다만 사업자가 현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으로 분류되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자치구 및 운영주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다. 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등에 따라 시행”하도록 기부식품의 제공 원칙을 정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시행령 제5조3)에 근거한 것임. 기부식품은 그 성격상 ‘무상’

2)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할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부식품의 모집과 제공과정이 투명해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1순위로 하여 이용자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용기간도 6개월에서 1년까지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안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표〉 이용자 선정기준 및 제공기간

우선순위	대상자	이용기간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1년
2순위	차상위계층	9개월
3순위	기부식품 제공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 대상자	6개월

- 또한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정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할 것인 바, 현재 이용품목으로 가공식품, 장류 및 식용류, 음료류, 제빵류 등이 있고, 모집가능기한과 배부기한도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표〉 모집가능기한 및 배부기한 준수

구 분	모집가능 기한	유통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부기한
가공식품	최소 15일 이전	10일~1개월 이하의 식품은 대규모 인원에게 의해 단기간 소비 가능한 시설, 단체에만 배분
장류 및 식용류	최소 15일 이전	
음료류	최소 10일 이전	
신선식품	최소 7일 이전	7~10일 이하 식품은 대규모 인원에게 의해 소비가 가능한 시설, 단체에만 배분
제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접수 당일 또는 익일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즉시 취식가능한 시설이나 개인에 배분

라. 보조금 지원 (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7조4)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을 구체화 한 것임.

또한 서울시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 2013년도에 16억 2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등 매년 유사 사업에 대한 예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임.

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표〉 서울시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예산지원 내역

구 분(조례안 각호)	항목	'13년 예산액(천원)
1. 공공요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기부 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	운영비	145,500
2. 기부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냉 장·냉동 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보강 에 따른 경비	기초푸드뱅크 기능보강비	34,500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 담인력 등 인건비	인건비, 복지수당, 처우개선비	1,396,356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푸드뱅크/마켓통합 운영에 따른 부대경비 지원	50,000
	시책업무추진비	3,000
계		1,629,356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
뱅크·마켓 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고 식품기부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기부식품의 전달체계가 이원화(뱅크/마켓)되어 있어 기부식품의
자원이나 인력관리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이
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 현황

연번	구 분	사업주체	소재지
1	서울광역푸드뱅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도봉구 창동 1-7
2	종로구	사북)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종로구 송인동 55-2 송인1동주민센터 4층
3	중 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구 신당 5동 160-2 1층
4	용산구	사북)용산구의정회	용산구 갈월동 71-1
5	성동구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성동구 마장동 527-2
6	광진구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34
7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구 신설동 104-35
8	중랑구	사북)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	중랑구 봉화산로56길 22(신내동)
9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길음3동 905
10	강북구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강북구 번3동 241 주공(A)2단지 202동
11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 창동 20번지
12	노원구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중계3동 514-3
13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월계2동 556 주공1단지내
14	은평구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은평구 수색동 8-15
15	서대문구	서대문사회복지협의회	서대문구 홍은동 425-1
16	마포구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 신공덕동 15-66
17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정동 양천(아) 양천지역복지발전센터내
18	강서구	사북)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강서구 공항동 51-42 1층
19	구로구	구 로 구 청	구로구 구로동 494-20
20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천구 시흥동 241-7 청담복지관 내
21	영등포구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 당산동121-41 강변한솔그리차아101호
22	동작구	사북)청해복지재단	동작구 사당동 252-17 서림빌딩204
23	관악구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관악구 봉천5동 1699-6
24	서초구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서초구 우면동 68-1 바우뢰복지문화회관 지하
25	강남구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수서동 723 도시개발(아)6단지내
26	송파구	송파노인복지센터	송파구 마천동 182-2
27	강동구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강동구 동남로 926(고덕동)

<참고> 푸드마켓, 푸드나눔카페 현황

연번	구 분	사 업 주 체	소 재 지
1	푸드나눔 카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불광역 (지하철3호선)
2	푸드나눔 카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태능입구역(지하철6,7호선)
3	종로구	사복)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종로구 송인동 55-2 송인1동주민센터 4층
4	중 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구 신당 5동 160-2 1층
5	용산구	사)용산구의정회	용산구 갈월동 71-1 용산사랑나눔푸드마켓
6	성동구	대한구세군유지재단	성동구 도선동 318 1층
7	광진구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34
8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구 신설동 104-35
9	중랑구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	중랑구 봉화산로56길 22(신내동)
10	성북구	사복)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성북구 삼선동5가 22
		사복)일광복지재단	성북구 하월곡동 13-7
11	강북구	사복) 삼동회	강북구 수유동 385-2 중앙빌딩 2층
12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 창동 20번지
13	노원구	노 원 구 청	노원구 중계동 507-3 노원구민회관 지하1층
14	은평구	사복)감리회태화복지재단	은평구 대조동 224-5
15	서대문구	대한구세군유지재단	서대문구 냉천동 31-2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 서대문구 홍제3동 279-41
16	마포구	대한구세군유지재단	마포구 성산동 533-1 마포농수산물시장내1층 마포구 구수동 44-1
		사복)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마포구 노고산동 1-50 우리마포복지관 지하1층
17	양천구	양천사랑복지재단	양천구 신정동 1032-12 양천해누리푸드마켓
18	강서구	사복)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강서구 공항동 51-42 1층
19	구로구	구 로 구 청	구로구 구로동 494-20
20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천구 시흥동 241-7 청담복지관 내
21	영등포구	사복)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 신길동 215-9 태광빌딩 1층
			영등포구 당산동 121-41 강변한솔 그라치야H01호
22	동작구	사복)청해복지재단	동작구 사당동 252-17 서림빌딩204
23	관악구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관악구 서원동 86-1 다이아몬드빌딩 5층
24	서초구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서초구 우면동 68-1 바우피복지문화회관 지하
25	강남구	사복)하상복지회	강남구 개포동 12-10 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강남구 대치동 961-17 1층, 지하
26	송파구	사복)연꽃마을	송파구 마천동 182-2
27	강동구	사복)광림복지재단	강동구 동남로 926(고덕동)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안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포상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조례안의 포상규정은 인센티브 개념이며, 표창과 부수하여 수여되는 ‘부상’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임.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

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서울특별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